

교양교육원 운영규정

제정 2012. 3. 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학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교양교육원(이하 '교육원'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직무)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양교육에 관한 발전계획의 수립
2.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
3. 학기별 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
4.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수-학습의 지원
5. 교양교육과 관련한 교육 시설의 운영 및 관리
6. 기타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

제2장 교양 교육과정

제3조(교양 교육과정) ① 본교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교양 교육과정을 둔다.
② 교양 교육과정은 본교의 학칙 및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규정 등에 따라 편성하고 운영한다.
③ 교양 교육과정의 개편 등은 본교의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다.
④ 교육원은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기초 연구 등을 지원한다.

제3장 조직 및 역할

제4조(조직) 교육원에는 교양교육원장(이하 '원장'이라 한다), 교육실장(이하 '실장'이라 한다), 주임교수 그리고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원장) ① 원장은 본교의 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서 보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제2조의 교육원의 직무를 통괄하며 교육원을 대표한다.

제6조(실장) ① 실장은 본교의 교원으로 보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실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주임교수) ① 주임교수를 배치할 영역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1. 교양교육 주임교수 : 교양교육 조정 및 교양 핵심 교과목 운영의 관리
2. 교양 외국어 주임교수 : 교양 외국어 교과목 운영의 관리
3. 교양지원 주임교수 : 교양관련 비정규 교과 및 프로그램 운영의 관리

② 주임교수는 본교의 교원 또는 외래교수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주임교수는 원장을 보좌하여 담당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행정지원팀) ① 교육원의 행정을 지원 및 관리할 행정지원팀을 둔다.

② 행정지원팀의 구성, 직원 배치, 업무분장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행정지원팀은 원장과 실장의 통솔에 따라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4장 교양교육원 운영위원회

제9조(구성)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, 실장, 주임교수와 교무처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글로벌 리더십센터장으로 구성한다.

제10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1조(간사위원) ① 간사위원은 실장이 된다.

②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.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2. 교육원의 내규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
3. 교양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4. 교양 교과목 교수요원 추천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13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구성, 역할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5장 기타

제15조(재정) 교육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.

1. 교육원을 위하여 본교에서 배정된 금액
2. 기타 보조금 등

제16조(회계)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7조(규정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8조(운영세칙)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